

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

※ 신고인 제출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색상의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 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주민(법인)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
	주소(법인인 경우 법인 소재지)	전화번호

신고사항	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	전화번호
	영업소의 소재지	
	보관창고의 소재지(임차한 경우만 해당)	영업소 면적

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,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 1. 보관창고 임차계약서(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또는 물류이용계약서(외부 물류회사와 보관 등 물류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증(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수수료 28,000원 (수입인지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이용계획정보(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건축물대장(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
유의사항

- 신고한 영업을 휴업, 폐업,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32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「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.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하수도법」, 「농지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하천법」,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물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, 「관광진흥법」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주차장법」, 「지방세법」 등 그 밖의 관련 법령
-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수수료를 면제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➔	접 수	➔	검 토	➔	결 재	➔	신고증 발급
---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	---	--------

신고인

처리기관: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